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40
----------	-------

발의연월일 : 2026. 10. 1.

발 의 자 : 김용태 · 엄태영 · 조은희
김승수 · 서천호 · 김성원
박충권 · 김태규 · 이종배
정성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동물검역관은 동물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등의 장소에 출입해 검사·소독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우편 등 해외 물품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 축산물 반입에 의한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검역관의 출입·단속 권한이 공항 등 국경검역 단계에 한정되어 있어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금지 축산물에 대한 불법 반입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독자적인 단속 권한이 없는 동물검역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외국 식료품점 등을 단속한 결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의 수입이 금지된 축산물이 국내에 판매되는 위험 사례를 확인해 폐기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음.

이에 불법 반입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동물검역관의 출입단속 권한을 확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물건을 소각·매몰 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금지 축산물 유통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보세구역”을 “보세구역, 제34조의2에 따른 유통 장소(사무소, 판매소, 보관소, 창고, 저장소, 수입 금지품을 실은 차량 등 운송수단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질문을 할 수 있으며”를 “질문을 할 수 있고 제34조의2에 따른 유통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수입금지 물건 등의 유통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유통(유통을 목적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2.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
3.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검역관의 검역을 받지 아니한 지정검역물

② 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물건을 소유한 자에게 소각·매몰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각·매몰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이 경우 “화물주”는 “소유주”로, “지정검역물”은 “물건”으로 본다)을 준용한다.

제56조제2호 중 “제38조제4항”을 “제34조의2제3항 및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제57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물건을 유통한 자
제60조제3항제6호 중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을 “제30조제3항·제4항”으로, “검사”를 “검사·열람”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①·② (생략) ③ 검역관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열차, <u>보세구역</u>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보세구역, <u>제34조의2에 따른 유통 장소</u> <u>(사무소, 판매소, 보관소, 창고, 저장소, 수입 금지품을 실은 차량 등 운송수단을 말한다)</u> ----- -----.
④ 검역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 포장 및 그 밖의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u>질문을 할 수 있으며</u> ,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물건이나 용기, 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	④ ----- ----- ----- ----- ----- <u>질문을 할 수 있고 제34조의2에 따른 유통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u> -----.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

제34조의2(수입금지 물건 등의 유통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유통(유통을 목적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2.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

3.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검역관의 검역을 받지 아니한 지정검역물

② 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물건을 소유한 자에게 소각·매몰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각·매몰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이 경우 “화물주”는 “소유주”로, “지정검역물”은 “물건”으로 본다)을 준용한다.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5항(제3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7조 본문을 위반한 자

3.·4. (생략)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신설>

7. ~ 9. (생략)

제60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6.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검사 또는

제56조(벌칙) -----

-----.

1. (현행과 같음)

2. -----

-----제34조의2제3항 및 제38조제4항-----

3.·4. (현행과 같음)

제57조(벌칙)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물건을 유통한 자

7. ~ 9. (현행과 같음)

제6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30조제3항·제4항-----

-----검사·열람

물건 등의 무상 수거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 13. (생 략) ④ (생 략)	----- ----- 7. ~ 1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